<참고 1>

공사용자재 직접구매 제도

□ 제도 개요

○ 중소기업이 대형건설사 등의 하청업체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고, 중소기업 제품구매를 확대하여 경영안정을 지원

○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공사용 자재로 사용되는 품목을 직접구매 대상품목으로 지정하여 분리구매를 의무화('06년)

□ 대상제품 지정 현황 및 직접구매 대상 범위

○ 직접구매 품목: ('06)87개 → ('07)145개 → ('08)142개 → ('09)140개

*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: ('06)141개 → ('07)226개 → ('08)221개 → (09)226개

○ 직접구매 대상공사 범위

- 직접구매의 적용범위는 대상공사의 규모와 지정품목이 공사에서 차지하는 금액(추정가격 기준)에 따라 구분

· 대상공사의 규모 : 「건설산업기본법」 일반(종합)공사는 20억원 이상 공사, 전문(전기·통신공사, 소방시설 등)공사 는 3억원 이상

· 대상품목 : 소요자재 중 중기청장이 지정한 품목으로 품목단위로 추정가격이 3,000만원 이상인 경우

□ 관련 근거

○ 공공기관은 중기청장이 지정하는 제품(140개)에 대하여 공사에서 분리설계하여 직접구매하도록 규정

* 근거법률 : 「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9조, 동법시행령 제7조)